KBIZ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수 신 : 수신처 참조(지방자치단체장)

참 조 : 음식물폐기물 담당관

제 목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조달 구매 및 임대 건의

1.환경보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무 추진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조달청「구매입찰공고 제 20160800866-05 호 (2020. 06)」 와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1241698-01호(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와 관련입니다.

3.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수집운반 과정 및 최종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폐수, 악취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발생지에서 비용절감 감량 처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2020.3월에는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4. 발생지에서 감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법으로 「조달물자 구매입찰 다수 공급자계약 (MAS)」에 표준규격으로 적용되어 공공기관이 조달 구매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20.1.3)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조달구매 와 임대가 편리하게 되었읍니다.

5.따라서 귀부서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처리기 설치 업무 추진시 「조달청 조달물자 구매 및 임대서비스 」를 활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환경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별 첨 1.음식물쓰레기처리기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800866-05호) 1부 .

2.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1241698-01호) 1부

3.단체표준(SPS)「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의 특징 1부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이사장

수신자 수신자참조

★담당 02-387-7283 대리 변혜성 전무이사 김영배 이사장 유인수

협조자 이사 김정찬

시행 (2020.07.10.) 접수 ( )

우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314 / http://www.kfpec.or.kr

전화 02)387-7283 /전송 02)387-7284 / seres84@naver.com / 공개

한음처기조합 제 2020 - 63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800866-05 호 2020. 06.

※ 주요 정정사항

○ **2020년부터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가 단체표준 규격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서류를 명확화하기 위해 정정공고**

< 당초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TL B 959[음식물폐기물감량화 처리기기] 또는 SPS-B KFPC 0001-7231:201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에 한해 2가지 규격서(**KTL B 959, SPS-B KFPC 0001-7231:2018) 중 택일하여 MAS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단체표준 규격 (KFPC 0001-7231:2018)으로 일원화 할 예정임**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3-2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정정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규격(SPS-B KFPC 0001-7231)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⑩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 (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1241698-01 호

【주요 정정 내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에 따른 신규 규정 적용 **※ 본 공고는 2020.4.1. 적격성평가 신청분 부터 적용됩니다.** **<당 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정 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9-8-1118-00
○ 세 부 품 명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
○ 구매예정수량 : 1,500
○ 단 위 : 식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12.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단체표준(SPS)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의 특징

산업표준화법 제27조(법정임의인증)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SPS-B KFPC 0001-7231:2019) 단체표준 제정· 등록되어 인증 운용

□ 음식물폐기물 **발생지 감량화**를 위한 처리기 설치로 **시스템 개선**

- ㅇ 처리 체계
  - 집중화 방식 : 보관 · 수집 · 운반 · 계량 · 수수료부과 · 처리(6단계)
  - **발생지 : 주방처리 또는 공동처리(1 또는 2단계)**
- ㅇ 환경적 측면
  - 집중화 : 보관(부패 · 악취발생), 차량 이동(탄소배출 · 악취 · 노동) 수수료(행정비용), 님비 등
  - **발생지 : 즉시처리 편리함, 수익자 부담**
- ㅇ 경제적 측면
  - 집중화 : 비용증대, 수수료,노동 · 수송비, 대형기계작동경비
  - **발생지 : 개인부담으로 직접비용 절감 의식으로 감량화 노력**
- ㅇ 사회적 측면
  - 집중화 : 가사부담, 도시미관 저해, 수송 청소원 관계
  - **발생지 : 삶의 질 향상**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유일한 **「법정 임의 인증」**
KS표준이 없는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과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위한 **기술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장심사**(경영, 자재관리, 공정, 제조설비 관리 등) 와 **제품 시험 · 검사**(검사항목별, 품질기준, 시험결과, 판정) 등을 심사원과 인증위원회 심의로 합격한 제품만 **인증 발급**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기업체 진입 제한으로 중소 기업자 판로 확대 대상 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구매**) 계약**(MAS) 단체표준규격 적용**

○ 2020.1월부터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단체표준규격 단독 사용

□ 조달청 내자 공고(**임대서비스**) 제20191241698-00호 **단체표준규격 적용**

○ 2020.6월부터 조달물자(내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임대서비스」시행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품질 인증 관련 법규 적용 모두 반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SPS-B KFPC 0001-7231:2019」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품질 인증**

○ 품질과 성능·안전 및 편리성과 환경보호와 경제성과 A/S반영

○ 심사기준(겉모양, 감량률, 소음, 악취, 고형물배출률, 최종부산물의 품질, 소비전력량, 표시사항)에 모두 합격한 것.

□ 인증계약체결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조합 연대 보증 관리**

○인증제품 생산업체와의 협약 체결하여 전국A/S 구축

○인증서 발급시 PL(생산자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의 **구매 지원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중견 대기업 진입금지)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입찰**: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에 따라 조달 계약 체결

□ 건조식 처리기 세부 표준 : 별첨 부속서 A

□ 발효식 처리기 세부 표준 : 별첨 부속서 B

□ 발효건조식 처리기 세부 표준 : 별첨 부속서 C

부속서 A
(규정)

건조식 처리기 세부 표준

A.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이하 "처리기") 중에서 '건조식 처리기'에 관한 처리 성능과 그 시험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A.2 시험 조건

a) 시험에 필요한 시료 수는 원칙적으로 신청 제품의 용량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한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모든 시험은 통상의 운전 상태로 설치한 후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주위온도, 상대습도 등 시험환경조건은 시험성적서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A.3 처리 성능

건조식 처리기는 **표** A.1의 처리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A.1 — 건조식 처리기의 처리 성능

<table>
<tr><th colspan="3">품질 항목</th><th colspan="2">처리 성능</th><th>시험 방법</th></tr>
<tr><td colspan="3">처리 용량</td><td colspan="2">표시사항에서 명시한 처리용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처리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td><td>8.2 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3">겉모양</td><td colspan="2">a) 처리기의 외부는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b) 표면의 용접부위는 흠이나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
c) 도장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등이 없고 면이 평활 하여야 한다.
d) 플라스틱 성형품은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td><td>8.3 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3">감량률(질량, %)</td><td colspan="2">75 이상</td><td>8.4 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3">소음</td><td colspan="2">65 dB(A) 이하</td><td>8.5 항에 따름</td></tr>
<tr><td rowspan="2">악취</td><td colspan="2">배출(유출)구</td><td colspan="2">500 이하</td><td rowspan="2">8.6 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1 m 지점</td><td colspan="2">15 이하</td></tr>
<tr><td colspan="3" rowspan="6">부산물(잔재물)</td><td>함수율(%)</td><td>20 미만</td><td rowspan="6">8.8 항에 따름</td></tr>
<tr><td>유기물 함유율(%)</td><td>40 이상</td></tr>
<tr><td rowspan="4">중금속 함유량 (mg/kg)</td><td>As 50 이하</td></tr>
<tr><td>Pb 150 이하</td></tr>
<tr><td>Hg 2 이하</td></tr>
<tr><td>Cd 5 이하</td></tr>
</table>

표 A.1 — 건조식 처리기의 처리 성능(계속)

품질 항목	처리 성능	시험 방법
처리시간(h) (건조,발효,발효건조 시간)	24 h 이내	**8.9항에 따름**
표시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실제 측정한 소비전력량이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표시 값 대비 10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10항에 따름**
표시 사항	**표3**에 따른다.	**8.11항에 따름**

A.4 처리기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내 설치**
1)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제품이 동작하는 동안 항상 환기될 수 있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b) **실외 설치**
1) 실외에 설치할 때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3면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부속서 B
(규정)

발효식 처리기 세부 표준

B.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이하 "처리기") 중에서 '발효식 처리기'에 관한 처리 성능과 그 시험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B.2 시험 조건

a) 시험에 필요한 시료 수는 원칙적으로 신청 제품의 용량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한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모든 시험은 통상의 운전 상태로 설치한 후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주위온도, 상대습도 등 시험환경조건은 시험성적서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B.3 처리 성능

발효식 처리기는 **표** B.1의 처리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B.1 — 발효식 처리기의 처리 성능

<table>
<tr><th colspan="2">품질 항목</th><th colspan="2">처리 성능</th><th>시험 방법</th></tr>
<tr><td colspan="2">처리 용량</td><td colspan="2">표시사항에서 명시한 처리용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처리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td><td>8.2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겉모양</td><td colspan="2">a) 처리기의 외부는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b) 표면의 용접부위는 흠이나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
c) 도장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등이 없고 면이 평활 하여야 한다.
d) 플라스틱 성형품은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td><td>8.3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감량률(질량, %)</td><td colspan="2">50 이상</td><td>8.4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소음</td><td colspan="2">65 dB(A) 이하</td><td>8.5항에 따름</td></tr>
<tr><td rowspan="2">악취</td><td>배출(유출)구</td><td colspan="2">500 이하</td><td rowspan="2">8.6항에 따름</td></tr>
<tr><td>1 m 지점</td><td colspan="2">15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6">부산물(잔재물)</td><td>함수율(%)</td><td>40 미만</td><td rowspan="6">8.8항에 따름</td></tr>
<tr><td>유기물
함유율(%)</td><td>45 이상</td></tr>
<tr><td rowspan="4">중금속
함유량
(mg/kg)</td><td>As 50 이하</td></tr>
<tr><td>Pb 150 이하</td></tr>
<tr><td>Hg 2 이하</td></tr>
<tr><td>Cd 5 이하</td></tr>
</table>

표 B.1 — 발효식 처리기의 처리 성능(계속)

품질 항목	처리 성능	시험 방법
고형물 배출률(%) [배출(유출)수가 있는 경우]	투입량 대비 20 미만	**8.7항에 따름**
처리시간(h) (건조,발효,발효건조 시간)	24 h 이내	**8.9항에 따름**
표시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실제 측정한 소비전력량이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표시값 대비 10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10항에 따름**
표시 사항	**표3**에 따른다.	**8.11항에 따름**

B.4 처리기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내 설치**
1)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제품이 동작하는 동안 항상 환기될 수 있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수분조정제, 미생물군 등의 투입량, 투입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b) **실외 설치**
1) 실외에 설치할 때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3면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수분조정제, 미생물군 등의 투입량, 투입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부속서 C
(규정)

발효건조식 처리기 세부 표준

C.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이하 "처리기") 중에서 '발효건조식 처리기'에 관한 처리 성능과 그 시험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C.2 시험 조건

a) 시험에 필요한 시료 수는 원칙적으로 신청 제품의 용량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한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모든 시험은 통상의 운전 상태로 설치한 후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주위온도, 상대습도 등 시험환경조건은 시험성적서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C.3 처리 성능

발효건조(건조소멸)식 처리기는 **표** C.1의 처리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C.1 — 발효건조식 처리기 처리 성능

<table>
<tr><th colspan="2">품질 항목</th><th colspan="2">처리 성능</th><th>시험 방법</th></tr>
<tr><td colspan="2">처리 용량</td><td colspan="2">표시사항에서 명시한 처리용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처리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td><td>8.2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겉모양</td><td colspan="2">a) 처리기의 외부는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b) 표면의 용접부위는 흠이나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
c) 도장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등이 없고 면이 평활 하여야 한다.
d) 플라스틱 성형품은 변형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td><td>8.3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감량률(질량, %)</td><td colspan="2">75 이상</td><td>8.4항에 따름</td></tr>
<tr><td colspan="2">소음</td><td colspan="2">65 dB(A) 이하</td><td>8.5항에 따름</td></tr>
<tr><td rowspan="2">악취</td><td>배출(유출)구</td><td colspan="2">500 이하</td><td rowspan="2">8.6항에 따름</td></tr>
<tr><td>1 m 지점</td><td colspan="2">15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6">부산물(잔재물)</td><td>함수율(%)</td><td>40 미만</td><td rowspan="6">8.8항에 따름</td></tr>
<tr><td>유기물
함유율(%)</td><td>45 이상</td></tr>
<tr><td rowspan="4">중금속
함유량
(mg/kg)</td><td>As 50 이하</td></tr>
<tr><td>Pb 150 이하</td></tr>
<tr><td>Hg 2 이하</td></tr>
<tr><td>Cd 5 이하</td></tr>
</table>

표 C.1 — 발효건조식 처리기 처리 성능(계속)

품질 항목	처리 성능	시험 방법
고형물 배출률(%) [배출(유출)수가 있는 경우]	투입량 대비 20 미만	**8.7항에 따름**
처리시간(h) (건조,발효,발효건조 시간)	24 h 이내	**8.9항에 따름**
표시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실제 측정한 소비전력량이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표시값 대비 10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10항에 따름**
표시 사항	**표3**에 따른다.	**8.11항에 따름**

C.4 처리기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내 설치**

1)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제품이 동작하는 동안 항상 환기될 수 있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수분조정제, 미생물군 등의 투입량, 투입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b) **실외 설치**

1) 실외에 설치할 때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3면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를 이뤄야 한다.
2) 처리기의 설치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스폭발물 등 위험물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배출된 최종 부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봉투에 보관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수분조정제, 미생물군 등의 투입량, 투입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